

독도가 한국의 영토인 이 유

영토와 영유권 분쟁 그리고 독도 (1427-01)

22531161 이주영

1. 우산국 복속 (512)

- 신라 이찬(伊滄) 이사부(異斯夫)가 우산국을 정벌하여 신라가 우산국을 복속합니다.

이로써 울릉도와 독도는 우리 역사와 함께 하기 시작합니다.

『동국문헌비고』 (1770년)에는
“울릉(울릉도)과 우산(독도)은 모두 우산국의 땅”이라고 기술했습니다.

2.세종실록 지리지 (1454)

조선 초기 관찬서인 『세종실록』 「지리지」 (1454년)는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두 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산(독도) 무릉(울릉도)... 두 섬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울릉도에서 날씨가 맑은 날 육안으로 보이는 섬은 독도가 유일합니다.

3.다케시마 도해면허 (1625)

- 일본 막부가 돗토리번(지금의 돗토리현)에 살고 있는 오야·무라카와(大谷·村川) 양가에 다케시마(竹島, 울릉도) 도해(渡海)를 면허한 것입니다.
- 면허를 내린 시기는 1618년, 또는 1625년이라고도 합니다.

4.은주시청합기,사이토호센 (1667)

- 이 두 섬(울릉도, 독도)은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 고려를 보는 것이 운슈(雲州 - 현재 시마네현의 동부)에서 온슈(隱州 - 오키섬)를 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일본의 서북쪽 경계는 이 주(此州 - 오키섬)를 한계로 한다.

안용복 일본으로 납치 (1693)

안용복(安龍福), 박어둔(朴於屯) 두 사람이 울릉도에서 어업을 하다가 울릉도에 온 일본 오야·무라카와(大谷·村川) 양가의 선원들에게 잡혀서 일본으로 끌려간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조선과 일본 간의 울릉도 영유권에 대한 분쟁(울릉도 쟁계)이 발생합니다.

울릉도 수토제도 시행결정 (1694)

- 안용복 사건으로 인해 일본과 울릉도 영유권에 대한 분쟁(울릉도 쟁계)이 발생하자, 조선 정부는 삼척첨사 장한상(張漢相)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울릉도의 현황을 조사합니다.

그 이후 영의정 남구만의 건의에 따라 2년
걸러 한 번씩 관원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수토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일본 돛토리번 답변 (1695)

- 일본 막부는 울릉도 영유권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돛토리번에 울릉도의 소속을 질문(12월 24일)했습니다.

이에 대해 돛토리번이 막부에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돛토리번의 소속이 아니라고 답변(12월 25일)함에 따라 막부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공식적으로 확인합니다.

다케시마(울릉도) 도해금지령 (1696년 1월)

- 일본 막부는 돗토리번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확인하고 다케시마(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렸습니다 (1696년 1월 28일).

이후 조선과의 외교문서를 통해 울릉도가 조선령임을 공식 확인하였습니다(1699년).

안용복(安龍福) 일본 도해 (1696년 5월)

- 안용복(安龍福)이 울릉도에 어업 온 일본 어선을 추격하여 독도(자산도)에서 쫓아버리고, 일본에까지 다녀온 사건입니다.

이때 안용복이 오키섬 관리에게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령이라고 진술한 기록이 「원록9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에 실려 있습니다.

울릉도도형(鬱陵島圖形) (1711년)

- 1711년(숙종 37)에 울릉도수토관(鬱陵島搜討官) 박석창이 울릉도를 살펴보고 돌아와 올린 보고서에 첨부된 지도. 비변사에 소장된 비밀지도. 울릉도 아래에 섬을 그리고 '소위 우산도'라고 표기
- 지금은 없는 죽도가 그려져있어, 거기에 우산이라고 기재 해놓아, 지금까지도 일본의 자료로 사용되고 있음.

『동국문헌비고』 「여지고」 (1770년)

- 국왕 영조의 명에 의해 조선의 문물제도를 기록한 관찬서입니다.

이 책에는 “우산도(독도)와 울릉도...
두 섬으로 하나가 바로 우산이다...
「여지지」에 이르기를, 울릉과 우산은
모두 우산국의 땅인데, 우산은 일본이
말하는 송도(松島)다.”라고 하였습니다.

삼국통람도설 (1779)

- 일본의 하야시 시헤이(林子平)가 1785년에 편찬한 <삼국통람도설(三國通覽圖說)>의 부도(付圖 : 5매)인 <삼국접양지도(三國接壤之圖)>인데, 울릉도와 독도는 '한국 것[朝鮮ノ持ニ]'이라고 일본인 스스로 표기해 놓았다.

「개정일본여지로정전도」(1791)

- 에도시대 유학자 나가쿠보 세키스이(長久保赤水)가 제작한 지도임. 이 지도에 그려진 독도와 울릉도 옆에는 『은주시청합기』에 나오는 문구가 쓰여 있어, 이 지도가 『은주시청합기』에 근거하여 “일본의 서북쪽 경계의 한계를 오키섬”으로 나타냈음을 알 수 있음. 또한 1779년 초판을 비롯한 이 지도의 정식 판본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본토와 같이 채색이 되어 있지 않고 경위도선 밖에 존재하는 등 일본 영토와 다르게 취급되고 있음.

1846년

- 울릉도에서 몰래 고기잡이 하던 일본 어부가 발각
- => 일본에서 사형당함
- =1696년 1월 도해 금지령이 적용된 걸로 볼 수 있음.

일 외무성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1870년)

- 1870년 외무성 관리인 사다 하쿠보(佐田白茅) 등이 조선을 시찰한 후 외무성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조선 부속이 된 사정”이 언급되어 있어, 당시 일본 외무성이 두 섬을 조선 영토로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정관(太政官)지령」 (1877년)

- 1877년 3월 일본 최고 행정기구인 태정관이 내무성에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니라고 내린 지령입니다.

태정관은 17세기 에도 막부와 조선 정부 간 교섭(울릉도쟁계) 결과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 소속이 아님이 확인되었다고 판단하고, “다케시마(울릉도) 외 일도(一嶋, 독도)의 건에 대해 일본방(本邦, 일본)과는 관계가 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무성에 내렸던 것입니다.

칙령(勅令) 제41호 반포 (1900년)

- 고종 황제는 칙령으로 '울릉도(鬱陵島)를 울도(鬱島)로 개칭(改稱)하고 도감(島監)을 군수(郡守)로 개정(改正)한 건(件)'을 제정 반포했습니다.

이 칙령 제2조에 울도군(鬱島郡)의 관할 구역으로 울릉전도(鬱陵全島), 죽도(竹島)와 함께 석도(石島, 독도)를 규정하여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시마네현고시(島根縣告示) 제40호 (1905년)

- 일본이 독도 영토 편입을 알리는 지방 고지입니다.

일본은 1904년 이래 만주와 한반도에 대한 이권들을 두고 러시아와 전쟁 과정에서 동해에서의 해전을 위한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1905년 독도를 무주지라 주장하면서 영토 편입을 시도하고 시마네현에 고시했습니다.

그러나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다계적 침탈
그리고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다계적 침탈
이러한 국권에 대한 다계적 침탈
과거에 영유권을 확고히 할 수 없었습니다.
독도 제법적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울도군수 심흥택 보고서 (1906년 3월)

- 울도군수 심흥택이 울릉도를 방문한 일본 시마네현(島根縣)의 관찰사(官察使) 다케다(田代)로부터 울릉도에 대한 소식을 듣고, 다케다(田代)의 관찰사와 내외(內務)부(內務部)의 행정안전부에 해당(해당)에 보고한 문서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본군 소속 독도"라고 하여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5월 의정부 참정대신
지령 제3호(대한제국 최고의 행정기구인 의정부에서 일본이 독도 영토 편입을 부인하는 지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정부는 강원도 관찰사로부터 일본이 울릉도를 영토 편입했다는 보고를 접하고, 울도군수(지금의 부총리격)의 지령을 참청(參淸)합니다.

카이로 선언 (1943년)

- 미국·영국·중화민국의 3개 연합국이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 모여 발표한 공동선언이다. 5일간에 걸친 회담에는 프랭클린 D. 루스벨트, 윈스턴 처칠, 장제스 등이 대표로 참가했으며 회담 결과 발표한 선언에서 연합국은 제2차 세계 대전 발발 후 최초로 일본에 대한 전략을 토의했다.
- 일본이 침략했던 모든 영토를 몰수하겠다.

포츠담 회담 (1945년 7월 17~ 8월 2일)

- 1945년 7월 17일부터 8월 2일까지 독일 포츠담에 있는 빌헬름 폰 프로이센 황태자의 집이었던 체칠리엔호프 궁에서 개최된 회담으로, 소련, 영국과 미국 등이 회담에 참여했다.
- 카이로 선언 확인 , 한국독립 인정, 한국영토 (한반도:울릉도,제주도,독도)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opin) 제 677호 (1946년 1월 29일)

-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의 통치 행정범위에서 독도를 제외시킨 각서) 이 각서로 인해 우린 독도에 진입 가능한 이유다. 잠정적인 조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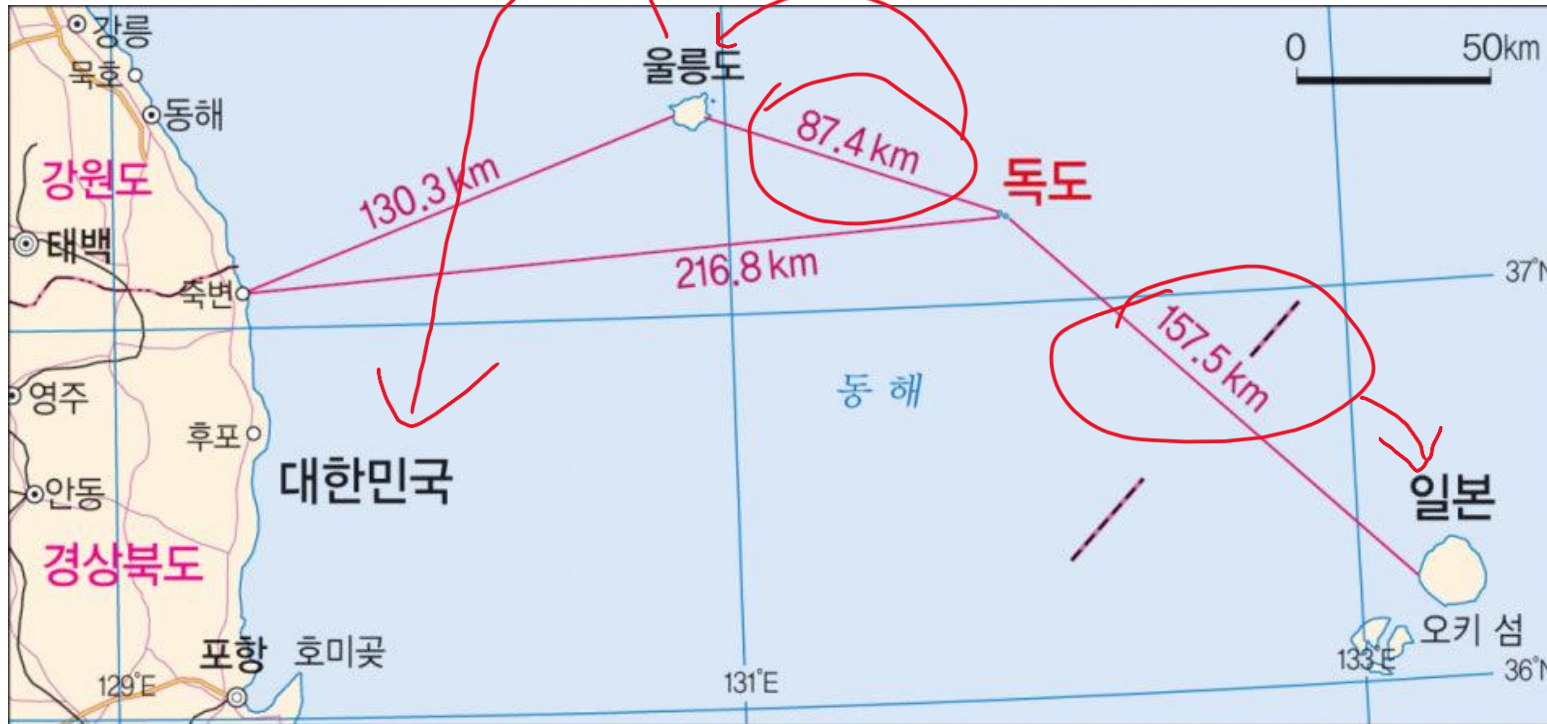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1951년)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 후 체결한 조약입니다.

이 조약 제2조(a)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 등을 포함하여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위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3천여 개의 도서 가운데 예시에도 불구하고, 독도가 직접적으로 영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지리적 요건



독도 거주자

- 故 최종덕씨가 1965년 3월부터 최초 거주한 이래,
현재 婦김신열씨(夫김성도씨 2018년10월 별세), 독도경비대원
20명, 등대관리원 3명,
울릉군청 독도관리사무소 직원 2명 등 거주 중
(2025년 4월 기준)

여권의 유무

- 독도는 한국의 것이라, 한국인들은 여권이 없어도 독도에 방문이 가능.

일본은 본인들의 영토가 아니라 여권이 없이는 올 수 없다
(일본인들이 독도에 들어갈 수 있는 번거로운 꿀팁도 존재한다.)

영토 분쟁 문제화

일본은 지속적으로 영토 분쟁으로 이끌어, 독도에 대한 주권을 행사하려 하지만 본인들의 땅이 아니니 주권이 없고, 강제로 불법 점거중이라 하지만 역사적 근거도 한국이 방대하여, 굳이 영토 문제로 발전 시킬 이유가 없다.

=한국은 분쟁화 할 필요가 없다.

기타

건축물: 한국의 우체통, 한국령 명패, 울릉군남면독도 명패, 독도 명패,
독도조난어민 위령비 (미국이 독도를 한국의 것이라 인정한 증거)

감사합니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